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21(금)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금천구 결산 총괄

가. 2023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907,504,542,186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871,278,405,646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226,136,540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40,295,193,340	41,493,613,360	28억	8,254,748,246	△854,022,640		128,222,552,912
일반회계	40,295,193,340	38,049,025,250	28억	8,224,906,056	△851,142,640		107,270,638,749
특별회계	-	3,444,588,110	-	29,842,190	△2,880,000		20,951,914,16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9,282,403,857원으로 예산현액 907,504,542,186원보다 31,777,861,671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6.5%인 719,070,318,63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12,085,218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40,295,193,340원, 사고이월비 41,493,613,360원과 계속비이월 2,800,000,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400,725,60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 임.

나.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28,222,552,912	97,666,681,000	30,555,871,912	
일 반 회 계	107,270,638,749	78,215,001,000	29,055,637,749	
특 별 회 계	20,951,914,163	19,451,680,000	1,500,234,163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7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19,451,68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9,055,637,749원과 특별회계 1,500,234,163원을 합한 30,555,871,912원이 2024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 반 회 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 별 회 계	100,000,000	0	0	0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431,748,000원으로서

전년도 32,473,993,000원보다 15,957,755,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으로 130,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9,500,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0,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9,960,529,938	1,546,401,681	11,109,730,656	9,563,328,975	41,506,931,619
남북교류협력기금	153,217,990	52,668,650	53,718,650	1,050,000	205,886,640
재난관리기금	6,813,509,572	△984,011,930	1,153,263,550	2,137,275,480	5,829,497,6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799,987,774	2,742,978,352	2,742,978,352	0	20,542,966,126
청년미래기금	2,060,176,208	63,412,830	113,589,470	50,176,640	2,123,589,038
중소기업육성기금	5,911,786,069	△853,277,453	4,065,877,130	4,919,154,583	5,058,508,616
자활기금	916,250,274	184,245,242	233,494,242	49,249,000	1,100,495,516
노인복지기금	351,435,402	506,658	7,884,158	7,377,500	351,942,060
양성평등기금	461,077,480	△31,349,887	9,123,763	40,473,650	429,727,59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76,551,225	△5,116,550	23,082,650	28,199,200	471,434,67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8,953,648	38,753,425	41,079,907	2,326,482	347,707,073
옥외광고발전기금	1,133,678,660	△132,942,540	148,246,630	281,189,170	1,000,736,120
도로굴착복구기금	2,690,685,059	486,381,671	2,417,872,541	1,931,490,870	3,177,066,730
식품진흥기금	883,220,577	△15,846,787	99,519,613	115,366,400	867,373,790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9,960,529,93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09,730,65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563,328,975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506,931,619원임

2. 행정안전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11,231,349,000	11,078,512,400	11,058,438,370	99.82
행정지원과	4,177,483,000	3,894,277,710	3,889,566,050	99.88
자치행정과	2,667,989,000	2,506,047,690	2,497,812,260	99.67
교육지원과	3,594,574,000	3,759,427,910	3,759,422,170	100.00
주민안전과	499,230,000	513,277,560	506,156,360	98.61
민원여권과	292,073,000	405,481,530	405,481,530	100.00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 예산현액은 112억 3,13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7,851만 2천원, 세입결산액은 110억 5,843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99.82%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170,876,640,326	154,546,476,677	10,475,937,360	333,126,747	5,521,099,542	3.23
행정 지원과	111,135,098,340	107,377,642,064	642,300,400	20,289,230	3,094,866,646	2.78
자치 행정과	15,573,128,980	13,252,276,480	1,262,968,190	62,692,000	995,192,310	6.39
교육 지원과	39,358,642,706	29,424,449,663	8,570,668,770	237,461,720	1,126,062,553	2.86
주안 안전과	4,084,511,300	3,791,617,780	0	8,584,037	284,309,483	6.96
민원 권과	725,259,000	700,490,690	0	4,099,760	20,668,550	2.85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현액은 1,708억 7,664만원이며, 지출액은 1,545억 4,647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 7,593만 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312만원 6천원, 집행잔액은 55억 2,109만 9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23%입니다.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322,292	14,516,154	8,345,913	2,473,976	
행정 지원과	관용차량운영	142,145	105,967	105,967	36,000	(연도내 지출불가) 차량 수급 불안정에 따른 조달 공급 지연으로 연도 내 차량 구매 불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자치행정과	생활안전 CCTV 설치	4,142,541	2,783,980	2,783,980	1,200,000	(연도내 지출불가) '24년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9월 특별교부세가 2023.12월 교부되어 집행불가
교육지원과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5,784,873	5,063,924	2,352,094	710,200	(연도내 지출 불가) 준공시기('24.2)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연도내 지출불가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	8,252,733	6,562,283	3,103,872	527,776	(연도내 지출 불가) 준공시기('24.2)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연도내 지출불가

○ 행정안전국 명시이월사업은 4건 24억 7,397만원 6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3,740,843	21,032,579	13,786,387	8,001,961	
행정지원과	효율적인리청사관리	1,567,954	1,500,128	893,827	606,300	설계용역 2024년 1월까지 연장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신설에 3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어려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기능보강	636,760	580,846	551,443	29,403	사전 절차로 연내 준공 어려움
	주민자치활성화사업지원	148,400	126,789	106,609	20,180	연구용역 준공시점인 2023. 12월 부터 제작 시작하여 2024년 3월에 완료
	자치회관 운영	214,000	213,443	200,858	12,585	구매건 폭증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주문생산 지연
	민간단체활동지원	33,820	33,798	32,997	800	조달구매 물품 중 일부 물품은 납품지연으로 출납 폐쇄기한 전에 지출 불가
교육지원과	맞춤형대입지원정책추진	695,341	684,507	535,455	149,052	학년 전환기간(1월~2월)에 상담 및 기타 프로그램을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설정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교육 지원과	금 천 진 로 진 학 지 원 센 터 건 립	6,232,968	5,512,019	2,599,283	2,912,736	다년도 사업으로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 불가
	금 천 구 평 생 학 습 관 립 건 립	8,939,500	7,110,947	3,651,313	4,215,405	집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사유 미발생
	(가 칭) 금 천 국 제 외 국 어 센 터 조 성	5,227,100	5,226,102	5,199,902	26,200	건축기획 용역 준공 시기(24. 3월) 미도래
	금 천 사 이 언 스 큐 브 운 영	45,000	44,000	14,700	29,300	겨울방학(24. 1~2)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방학 전(23. 12월말) 계획 수립 및 홍보, 계약 등

○ 행정안전국 사고이월사업은 10건 80억 196만 1천원임.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행 정 안 전 국			60,431,712	1,451,899	1,451,899	
행 정 지 원 과	환경대응능력 향 상 지 원	201-01 사무관리비	34,800	3,000		주민에게 칭찬받는 친절 직원 수 증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예산 부족
	친절문화정착	303-01 포상금	8,600		3,000	
	인 력 운 영 비 (기 관 운 영)	101-02 기타직 보수	6,840,737	300,000		직급보조비가 2023. 4. 4 자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발생
		204-02 직급보조비	2,537,888		300,000	
	인 력 운 영 비 (기 관 운 영)	101-02 기타직 보수	6,540,737	120,000		보수총액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금 기관부담금 부족분 발생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805,402		120,000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101-02 기타직보수	6,420,737	769,191		기 퇴직자 연금급여 및 연금부담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발생
		304-01 연금부담금	15,153,198		769,191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303-02 성과상여금	3,988,220	252,508		기 퇴직자 연금급여 및 연금부담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발생
		304-01 연금부담금	15,922,389		252,508	
자치행정과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9,024	2,000		신협 건물 기부체납 이후 우리 구가 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됨에 따라 국민운동단체 사무 공간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발 생되는 공공요금 납부 필요
	민간단체 활동지원	201-02 공공운영비	0		2,000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960	4,00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 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행사진 행 등 전문업체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
		201-03 행사운영비	4,650		4,000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301-14 기타보상금	17,720	1,20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 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행사진 행 등 전문업체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전용
		201-03 행사운영비	8,650		1,200	

○ 행정안전국 예산의 전용은 2개부서 8건 14억 5,189만 9천원임.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산	출액
계	170,876,640	5,521,099	3.23	418,395	107,441	594,216	4,401,047	0	
행정지원과	111,135,098	3,094,866	2.78	291,767	96,646	44,800	2,661,653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잔	출액	예비비
자치행정과	15,573,129	995,192	6.39	15,383	72	0	979,737	0		
교육지원과	39,358,643	1,126,062	2.86	44,975	10,422	549,416	521,249	0		
주민안전과	4,084,511	284,310	6.96	66,270	301	0	217,739	0		
민원여권과	725,259	20,669	2.85	0	0	0	20,669	0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집행잔액은 55억 2,109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23%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839만 5천원, 낙찰차액이 1억 744만 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421만원 6천원, 지출잔액 44억 104만 7천원임.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6,966,727	△931,344	1,206,981	2,138,325	6,035,383
남북교류기금	행정지원과	153,218	52,668	53,718	1,050	205,886
재난관리기금	주민안전과	6,813,509	△984,012	1,153,263	2,137,275	5,829,497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 698만 1천원

이며 사용액은 21억 3,832만 5천원으로 최종 2023년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0억 3,538만 3천원임.

라. 예비비 결산현황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
(※ 복지지원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1건 1억 1,950만원)

3.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년대비 3.69% 감소한 3.23%임.
- 교육지원과의 경우 이월사업이 많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1.7%인 85억 7,066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행정안전국 일부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당초 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정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